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83번길 50(신평동, 샹트패밀리타운)					
토 지	지 목	대			면 적	9,940.00 ㎡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 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면 적	10,977.18 ㎡
임대할 부분	제 2층 제 207호				면 적	29.25 ㎡

2. 계약내용

제 1 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일금 일백만 원정 (₩1,000,000)	
계 약 금	일금 일백만 원정 (₩1,000,000)	은2021년3월19일 계약시 지불하고영수함.
중 도 금	일금 영 원정 (₩0)	
잔 금	일금 영 원정 (₩0)	
차 임	일금 이십오만 원정 (₩250,000)	은 매월 14 일 선불로 지불한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2020 년 10 월 14 일부터 2021 년 10 월 13 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어길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기물을 임대인의 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다.

제 7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8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 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제 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날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중개대상물확인 및 등기부등본 확인하였음
2.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옵션(에어컨,세탁기,냉장고,싱크대,tv,옷장 등)주요시설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단,파손 및 훼손 이외 자체 결함원인으로 인한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원상회복 미이행시 보증금에서 정산 후 처리한다.
3.임차인은 계약만기 1개월전 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연장통보하여야하며,계약만기 전 계약 해약시,같은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부동산 의뢰시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한다.
4.월관리비(공용관리비)는 개별부담으로 한다.
5.반려동물로 인해 벽지,장판등의 훼손시에 임차인이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6.임차인은 계약만기 또는 계약해지시 청소비 —金오만원(₩50,000)정을 지불한다.
7.월차임은 매월 14일 아래의 계좌로 송금한다.(전세입자 계약기간을 승계받는조건으로 계약한다.)
8.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였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우선변제,확정일자,주소이전에 따른 대항력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하였음.
9.월차임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강제명도(해당 호실 현관문 강제철거 및 집기류 철거, 전기차단) 분실,파손 임대인 책임없음

[월차임 입금계좌] 신 협 131 018 342722 (예금주:권회진)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21 년 3 월 19 일

임 대 인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47번길 74,401호(탑동,남단주택)					
	주민등록번호	701205[redacted]	전 화	01[redacted]	성 명	정 경 범	(인)
임 차 인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서로114번길13,401호(명장동,골든빌리지)					
	주민등록번호	000907[redacted]	전 화	010-[redacted]	성 명	이 재 민	(서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2로11번길 20,1층102호(명지동)					
	사무소 명칭	에이치(H) 공인중개사사무소	대 표	서명·날인	허도연		
	허 가 번 호	제26440-2019-00062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전 화	051-293-6600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인)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100-15 상또패미리타운 2층 208호			
토 지	지 목	대지	면 적	28.2462 ㎡
건 물	구조·용도		면 적	㎡
임대할부분	2층 208호		면 적	61.23 ㎡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백만원 원정 (W 1,000,000)
계 약 금	금 4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주금숙 ㊞)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600,000 원정은 2018 년 4 월 8 일에 지불한다.
차 임	금 이십일만원 (210,000) 원정은 (선불로·후불로) 매월 8 일에 지불한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8 년 4 월 8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 년 4 월 7 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 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________%로 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농협 121043-52-149842 정덕용

입금자는 김정일 명의로 송금키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 년 4 월 2 일

임대인	주 소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125-7					
	주민등록번호	690110 [redacted]	전 화	010 [redacted]	성 명	주금숙	㊞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임차인	주 소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100-15 상또패미리타운 2층 208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010-[redacted]	성 명	김정일	㊞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사무소명칭	
	대 표	서명및날인 ㊞		대 표	서명및날인 ㊞
	등록번호		전화	등록번호	전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 재 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100-15 송도 패밀리타운 4층 402호			
토 지	지 목	대지	면 적	1140㎡ 중 83.816 ㎡
건 물	구조·용도	7층 중 4층	면 적	40.0352 ㎡
임대할부분	4층 402호		면 적	전용면적 40.04 ㎡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삼백만원 (3.000.000)	원정 (₩ 3.000.000)
계 약 금	금 삼십만원 (3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정덕용 (인))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이백칠십만원 (2,700.000)	원정은 2018 년 11 월 11 일에 지불한다.
차 임	금 이십오만원 (250.000)	원정은 (선불로 · 후불로) 매월 11 일에 지불한다.

제 2 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8 년 11 월 11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 년 11 월 10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 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8 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________ %로 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교부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 2020년 5월 11일 까지는 월세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2. 2020년 6월 11일 부터는 집을 비울수 있으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단 월세는 2020년 6월 부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3.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전기세 95000 수도세 10000 > 주인이 부담한다 추가발생시 매월 입금한자 주인이 책임진다)
4. 농협: 121043-52-148842 (정덕용) 으로
(입금자: 배수지)
~~5. 관리비 (전기세 95.000 중 사용금이 되도 금액 만원) 월세를 지급한다) 정~~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및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 년 10 월 26 일

임대인	주 소	부산시 사상구 엄궁북로 62. 롯데캐슬Ⓐ 102동 2201호				
	주민등록번호	660701-[redacted]	전 화	010-8[redacted]	성 명	정덕용
	대 리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임차인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2동 618-14. 덕원주택 601호				
	주민등록번호	830103-[redacted]	전 화	010-20[redacted]	성 명	배수지
	대 리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사무소명칭			
	대 표	서명 및 날인 ㊞	대 표	서명 및 날인 ㊞		
	등록번호	전화	등록번호	전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전세 ☐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100-15 신프대미리외을 4층 407호			
토 지	지 목	61.23㎡ 대지권		
건 물	구조용도	교통연구 미분지사	면 적	61.23㎡ 대지권 ㎡
임대할부분	4층 407호		면 적	29.24㎡ (전용) ㎡
			면 적	㎡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이백만원	
계 약 금	금 이백만원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2,000,000 —) 장미리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2019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 임	금 이십오만원 (250,000 —)	원정은 (선불로 · 후불로) 매월 11 일에 지불한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9 년 月 월 10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 년 月 월 일까지로 한다. (2년 계약)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________%로 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2. 실내 청소(소)는 현 상태로 임대하고, 청소기는 차임으로 한다.
3. 농협 [illegible]-47-52-14[illegible] (장미리) 계좌로 입금될 수 있다.
4. 관리비. 인터넷 포함 하여 이만천원은 월세 포함한다 (261,000)
[illegible]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 년 月 월 2 일

임대인	주 소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125-4 (학장동)				
	주민등록번호	660301-[redacted]	전 화	010-84[redacted]	성 명	장미리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임차인	주 소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06-6				
	주민등록번호	900125-[redacted]	전 화	010-26[redacted]	성 명	박재현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사무소명칭	
	대 표	서명및날인 ㊞	대 표	서명및날인 ㊞
	등록번호	전화	등록번호	전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